|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 | 토서 | | | | |
|-----|--|----|--------------------|----|------------------|---|
| 1.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 | | | | |
| | 항 목 | | 여부 나 기재) 마채택 | 근거 | 확 (허기권자 확인 | |
| 가 | . 건축부문 | 세탁 | | | 박건 | 工 |
| 1 |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 | | | |
| 2 |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 | | | | |
| 3 |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 을 준수하였다. | | | | | |
| 4 |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 | | | |
| (5) |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제외) | | | | | |
| 6 |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 | | | | |
| 7 |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 능지표의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 | | | | |
| 나 | . 기계설비부문 | | | | | |
| 1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제1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 | | | |
| 2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 | | | | |
| 3 |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 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 | | | | |
| 4 |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만해당) | | | | | |
| 5 |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너지성능지표의기계부문 16번 또는 17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 | | | | |
| C | 나. 전기설비부문 | | | | | |
| |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 기만 해당) | | | | | |
| 2 |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개선 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설 또는 교체 전 동기만 해당) | | | | | |
| 3 |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 | | | |

(12쪽 중 제2쪽)

| 4 | 조명기기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 | | |
|---|---|--|--|--|
| 5 |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 | |
| 6 |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였다. (공동주택 제외) | | | |
| 7 | 공동주택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 | | | |
| 8 |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 하여야 한다. | | | |

-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 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2. | 에너 | 지성능지표 ^{주1)} | | | | | | | | | | | | |
|----|-----------------|---|--|-------------|-----------|-----|-----|------------------|--------------------------|--------------------------|--------------------------|--------------------------|-------------|----|
| | | | | 기본배 | , | | | | | 배점 (b) | | | | |
| | | 항 목 | 비 ² 대형 (3,000㎡ 이상) | 소형 (500~ | 주 주택 1 | |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평점 (a*b) | 근거 |
| | | | | | | | 중부1 | 0.380미만 | 0.380~0.430미만 | 0.430~0.480미만 | 0.480~0.530미만 | 0.530~0.580미민 | | |
| | | | 04 | 0.4 | | | 중부2 | 0.490미만 | 0.490~0.560미만 | 0.560~0.620미만 | 0.620~0.680미만 | 0.680~0.740미민 | | |
| | | | 21 | 34 | | | 남부 | 0.620미만 | 0.620~0.690미만 | 0.690~0.760미만 | 0.760~0.840미만 | 0.840~0.910미민 | | |
| | 1.외벽의 주2) 주3 | 의 평균 열관류율 Ue(W/m²-K) ³⁾ | | | | | 제주 | 0.770미만 | 0.770~0.860미만 | 0.860~0.950미만 | 0.950~1.040미만 | 1.040~1.130미민 | | |
| | (창 및 | ! 문을 포함) | | | | | 중부1 | 0.300미만 | 0.300~0.340미만 | 0.340~0.380미만 | 0.380~0.410미만 | 0.410~0.450미민 | | |
| | | | | | 31 | 28 | 중부2 | 0.340미만 | 0.340~0.380미만 | 0.380~0.420미만 | 0.420~0.460미만 | 0.460~0.500미민 | | |
| | | | | | 01 | 20 | 남부 | 0.420미만 | 0.420~0.470미만 | 0.470~0.510미만 | 0.510~0.560미만 | 0.560~0.610미민 | | |
| | | | | | | | 제주 | 0.550미만 | 0.550~0.620미만 | 0.620~0.680미만 | 0.680~0.750미만 | 0.750~0.810미민 | | |
| | o 되브o | 의 평균 열관류율 Ur (W/m³·K) | | | | | 중부1 | 0.090미만 | 0.090~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민 | | |
| | 주2) 주: | 3) | 7 | 8 | 10 | 10 | 중부2 | 0.090미만 | 0.090~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민 | | |
| | (천창 부위의 |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기 평균 열관류율) | | | | | 남부 | 0.110미만 | 0.110~0.120미만 | 0.120~0.140미만 | 0.140~0.150미만 | 0.150~0.180미민 | | |
| | | | | | | | 제주 | 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10미만 | 0.210~0.250미민 | | |
| | | | | | | | 중부1 | 0.100미만 | 0.100~0.110미만 | 0.110~0.130미만 | 0.130~0.150미만 | 0.150~0.180미민 | | |
| | |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m³·K) ^{주2) 주3)} | 5 | 6 | 6 | 6 | 중부2 | 0.120미만 | 0.120~0.130미만 | 0.130~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210미민 | | |
| | Uf (W | / m²·K) ⁺²⁾ +3) | | | | _ | 남부 | 0.150미만 | 0.150~0.170미만 | 0.170~0.190미만 | 0.190~0.210미만 | 0.210~0.260미민 | | |
| 건 | | | | | | | 제주 | 0.200미만 | 0.200~0.220미만 | 0.220~0.250미만 | 0.250~0.280미만 | 0.280~0.340미민 | | |
| 축부 | (단, 경 | 열교부위의 단열 성능 (W/mK) 창 및 문 면적비가 50%미만일 한함) | 4 | 6 | 6 | 6 | 0.4 | 00미만 | 0.400~ 0.440미만 | 0.440~ 0.475미만 | 0.475~ 0.515미만 | 0.515~ 0.550미만 | | |
| 문 | F2292 | 성 창 및 문의 설치(KS 1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15(m'/hm')) ^{줘)} | | 6 | 6 | 6 | | 등급 (1 ㎡미만) | 2등급 (1~2 m³/hm³미만) | 3등급 (2~3 m³/hm³미만) | 4등급 (3~4 m³/hm³미만) | 5등급 (4~5 m³/hm³미만) | | |
| | _ | 문의 접합부에 기밀테이프 등 성능 강화 조치 | 1 | 2 | 2 | 2 | | 외기 | 직접 면한 칭 | t 및 문 면적S | 의 60% 이상에 | 적용 | | |
| | | 부하저감을 위한 거실 외피 당 평균 태양열취득 ^{주6)} | 7 | 5 | 3 | 3 | II | W/m² 기만 | 19~24W/m² 미만 | 24~29W/m² 미만 | 29~34W/m² 미만 | 34~39W/m² 미만 | | |
| | | 8.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의 방풍구조 설치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이중문 설치 | | - | 1 | 1 | | | • | 적용 여부 | | | | |
| | 공동 주택 | 9.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 ^{주7)} | - | - | 1 | 1 | 1.2 | 20이상 | 1.15이상~ 1.20미만 | 1.10이상~ 1.15미만 | 1.05이상~ 1.1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 |
| | | 10.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4번에 대한 보상점수 | | - | 1 | 1 | | | | | | | | |
| | | | | | 건축부 | 문 소 | 계 | | | | | | | |

(12쪽 중 제4쪽)

| *** 기타 변경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 | | | | | | | | | | | (12= | 중제 | 114号) |
|---|-----|----------------------|----------------------|---------------------------------|---------------|-----------------------|---------------|------|-------------------------|--------------------|------------------------|-------------|-----------|----|-------|
| 1.난반 | | 기본배점 (a) | | | | | | | | | 배점 (b) | | | | |
| 1.난남 기스 출앙난화발식 1.난남 기스 출앙난화발식 1.난남 기스 출앙난화발식 1.난남 기스 출반 보의의 1.난남 기스 출앙난화발식 1.난남 기스 출앙난화발식 1.산남 기스 출앙 기스 | | | 하 | 목 | 대형 (3,000㎡ | 소형 (500~ 3,000㎡ | |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근거 |
| 1. 남는 가스 성임 모임의 개발난망와 7 6 9 6 18급 300년 86의인 86의인 86의인 80의인 18리인 | | | 7 | 기름 보일러 | 916) | 미만) | | | 93이상 | 1 | l | 87미만 | 84미만 | | |
| 설심 보위 개발단방생 7 6 9 6 제품 고요발 1 1 1 1 1 1 1 1 1 | | 1 나바 | 71. | 중앙난방방식 | | | | | 90이상 | 1 | | | 82미만 | | |
| 유도함 기타 난당선비 | | 설비 | | 개별난방방식 | 7 | 6 | 9 | 6 | | - 90 <u>015</u> | - 000157 | <u> </u> | | | |
| | | (효율%) | 기 | 타 난방설비 | | | | | 고효율 제품, (신재생 | _ | - | - | | | |
| 2 - 변방 기수 18 - 28 18 18 - 2 | | | 원심식 | (성적계수, COP) | | | | | 5.18이상 | | | | 3.52미만 | | |
| 2.생황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가 기 | | | 흐수시 | ①1주 う 요 | | | | | 0 75이사 | | 0.7~ | 0.65~ | 0 650101 | | |
| 실비 OP 0년호수가 1 - 1 - 0 - 0 - 9 0 - 9 - 0 0 - 9 0 - 9 - 0 0 - 9 | | | | | | | | | 0.75013 | 0.75미만 | 0.73미만 | 0.7미만 | 0.03미단 | | |
| 기타 냉방성비 | | | 계수, | ③3중효용 | 6 | 2 | _ | 2 | | | | | 0.9미만 | | |
| - 설비 체택(설비별 배점 후 용량 3 1 1 - 1 1 60%이상 57.5%이 5.5%이만 55%이만 50%이만 75.5%이만 50%이만 | | | | | | | | | _ 제품, (신재생 | _ | _ | _ | | | |
| | | 설비 가중: | 채택(설! 평균) | 비별 배점 후 용량 | _ | 1 | _ | 1 | 60%이상 | | | | 50%미만 | | |
| 점프되구마이저시스템 등 의기 3 1 - 1 전체 외기도입 풍량함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전체 외기도입 풍향함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전체 전체 공략하여 전체 기계 전체 외기도입 풍향함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전체 외기도입 풍향함의 60% 이상 성용 이상 등이 이상 적용 여부 전체 전체 기계 전체 기계 | | 4.냉온수 | -, 냉각수 | 순환, 급수 및 급탕 | 2 | 2 | 3 | 3 | II | | | | | | |
| 남당시스템의 도입 조조기 부작형 조조기 분야 기 보고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다 보고 | | <u> 펌프의</u> 5.이코. | <u> 우주안</u> 노마이저 | <u>요율설비 재택 ' "</u> 시스템 등 외기 | | | | | | | | | • | | |
| 1 | | | | 도입 | 3 | | _ | ' | 선제 또 | 4기도입 궁 | | | 용 여구 | | |
| 6. 고효율(열회수형 성실 기 병반 기한 기한 기반 1 1 1 1 1 1 1 1 1 | | | | 공조기 무작형 개별 자연 | | | | | | | | | | | |
| 2 | | 6 759 | odəl스ə | | | | | | 74 이상 | 73 이상 | 72 이상 | 71 이상 | 70 이상 | | |
| 함 이상 86 이상 86 이상 80 이와 80 이 | | | | 6 / OH . | 3 | 3 | 3 | 3 | 57 이상 | 54 이상 | 51 이상 | 48 이상 | 45 이상 | | |
| 전 | | 주10) | | │ᇂ ∥연열∥난방│ | | | | | 88 이상 | 86 이상 | 84 이상 | 82 이상 | 80 이상 | | |
| 설 비 비 무 | 계 | | | 율 교환 | | | | | 72 014 | 60 014 | 66 0171 | 62 0171 | 60 014 | | |
| 1 | l | | | (%) /I 33 | | | | | | | _ | _ | | | |
| 보 | | 7.기기년 | 배관 및 | 덕트 단열 | 2 | 1 | 2 | 2 | 이상 단열 | 재 적용 여 | | | | | |
| | 1 . | | | | 2 | 1 | 2 | 2 | | | [의 60% 이 | 상 적용 0 | 녀부 | | |
| □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0.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 이용 냉방, 지역생방, 소형염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당방 적용병방 점용 방의 유류 이용 냉방, 지역생방, 소형염병합 당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당방 적용병방 점용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당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번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 A.B 또는 커미셔딩 실시 15. T. A.B 또는 커미셔딩 실시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 병합보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낸단방방식 작원 시작을 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8.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8.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낸단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기계불가 설무의 보상점수 18.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작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9.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낸단방박식 주비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8.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부 | 또는 9.공기 <i>:</i> | <u>나난세어</u> 조화기 판 | <u>운전</u> I에 가변속제어 등 | | | | | | | | | | | |
| 10. 북당식 전기당당, 기억 및 구튜 이용 냉방, 지역냉방, 조형열병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냉방용량 담당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당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번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자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 문 | 에너지 | 절약적 | 제어방식 채택 | | 1 | - | 1 | 공기소화기 | 용 선제 - | 낸 동력의 - | 60% 이상 · | 석용 여부 | | |
| 생방 적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11.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 전체 등에 이상 적용 여부 전체 등록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전체 등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보여 기반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병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병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 | 00 | 00 | 70 | 00 | | |
| 명방 적용(냉방용량 담당 비율, %) 11.전체 급당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당용 보일러는 고효율세품인 경우에만 배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입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에너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1 | - | 1 | 100 | | 1 | I | | | |
| 11. 전체 급탕용 보일러 용량에 대한 우수한 효율설비 용량 비율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기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통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6. 지역난방망식 또는 소형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비가를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비가를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존심 선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존심 선제 난방설비 용량시 산점수 전체 난방설비 용량시 안상식 등 전체 난방설비 용량시 개별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시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역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시 안상식 등 전체 난방설비 용량시 기상 전용 여부 | | | | | | | | | | 100-12 | 00-11 | 00-16 | , 0=10 | | |
| (단, 우수한 효율설비의 급탕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면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기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기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기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기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기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기미셔닝 - T.A.B 지역난방 보석 본는 소형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관 설치에 한함) 18. 함께 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이 60% 이상 적용 여부 | | 11.전체 | 급탕용 | 보일러 용량에 대한 | | | | | | | | | | | |
| (단, 우두안 요출절미의 급당용 보일러는 고효율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12.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단의 점용이 보상점수 작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2 2 2 생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2 4 2 4 4 명원이상 지원 지하구 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3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지역난방, 소화가스열병합합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 1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 | | | 0001:1 | 70~ | 60~ | 50~ | F0-1-1 | | |
| #점) 12. 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및소약로 자연방상식 또는 소형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반의 보상점수 지역 및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 이상 이상 적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1.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존한 성우의 보상점수 점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점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 · - / | — | | II . | 2 | 2 | 2 | 80이상 | 1 | 1 | I | 50미만 | | |
| 12.냉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의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존해 용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8. 항목의 보상점수 19. 생방 또는 난방 순환수, 냉각수 순환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기가 지하는 한 기가 | | _ | . — | ⁽ 설제품인 성구에만 | | | | | | | | | | | |
|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1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 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기계월나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이 성 적용 여부 | | | | 방 순환수, 냉각수 | | | | | | 1 | <u> </u> | <u> </u> | I. | | |
| 제어 등 에너시절약석 제어방식 채택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한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1 1 1 1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11)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8. 함부 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9.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9. 해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 | | | 11 ン | 1 | 2 | 2 | 냉방 또 | | | | 범프 전체 | | |
| 13.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 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4 2 4 4 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대절당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욕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 | 등 에너 | 지절약적 제어방식 | | ' | | | | 동력의 | 60% 이상 각 | 덕용 여부 | | | |
| 전동기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항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보이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작의 성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8 2 4 4 전용량이 성용 여부 | | | 요퍼ㅠ | ᄄ느 기아그스퍼프 | | | | | | | | | | | |
| 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설보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4 2 4 4 기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 용량(인재생에너지난방 용량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 | | | | 1 | 1 | 1 | 근수요 | 펌프 전체 | 동력의 60 | % 이사 저 | l용 여부 | | |
| 14.기계환기설비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지역난방, 소항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작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상 적용 여부 연당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상 적용 여부 연당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상 적용 여부 1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상 적용 여부 1개별난방 또는 개별생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u> </u> | ' | ' | ' | 110 | ㅁㅡ 근제 | J 1-1 00 | · 10 7 | | | |
| 방식 설비 채택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커미셔닝 - T.A.B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4 2 4 4 명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4.기계 | 환기설비 | 의 지하주차장 | ll | | | | | | | | | | |
| 15. T.A.B 또는 커미셔닝 실시 1 1 - - 커미셔닝 - T.A.B - - | | | | | 1 | 1 | 1 | 1 | 지하주차정 | · 환기용 팬 | 전체 동력의 | 박 60% 이성 | 보적용 여부 | | |
| 16.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 병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 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 상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1 | 1 | | | 커미서니 | | ТЛР | _ | I _ | | |
| No. 14-16-86 억 보는 보이기 = 명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 여부 (단, 부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8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 · | | | | 기 <u>의적</u> 당 지역난방 | , 소형가스 | r. <u>n.b</u> 열병합발전 | , 소각로 후 | 활용 폐열 | | |
| 지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전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0 8 12 9 절비용당 제외)의 60% 이상 작용 여부 (단, 무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점 이상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 ^{↑(1)} 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 – | . – – . – | II . | | | | 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방 | | | | | | |
|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발견은 기계구는 1인 영국의 대점(b) 0.9점 이성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수준 설치에 한함)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 ¹¹⁾ 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4 2 4 4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8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11 (1) | 8 | 12 | 9 | | | | | | | |
| 17.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 주 ¹¹⁾ 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4 2 4 4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4 2 4 4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 | | | | | | | | | | | | |
| 주 ¹¹⁾ 을 채택하여 8번, 12번 항목의 4 2 4 4 용량의 60% 이상 적용 여부 목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 | | | | | | | | | | | | | |
| │ │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 | | | | II | 2 | 4 | 4 | | | | 식은 전체 | 난방설비 | | |
| 기계설비부문 소계 | | | | | | | | | | U% 미앙 ^스 | 1ㅎ 어누 | | | | |
| | | | | | | 7 | <u> 계설ㅂ</u> | 무문 소 | ≥ 계 | | | | | | |

| | | | 기본배 | 점 (a) | | | | 배점 (b) | | | | |
|-------------|--|----------------------|------------------------------|-------|------|---|---------------|---|---|--|-------|-------------|
| | 항 목 | 비 | F거 소형 | 주 | 거 | | | | | | 평점 | 근거 |
| | 8 = | 대형 (3,000㎡ 이상) | 소영 (500~ 3,000㎡ 미만) | 주택 1 | 주택 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a*b) | <u></u> ⊏∕1 |
| | 1.거실의 조명밀도(W/m³) | 9 | 8 | 8 | 8 | 8 미만 | 8~ 11미만 | 11~ 14미만 | 14~ 17미만 | 17~ 20미만 | | |
| | 2.간선의 전압강하(%) | 1 | 1 | 1 | 1 | 3.5 미만 | 3.5~ 4.0미만 | 4.0~ 5.0미만 | 5.0~ 6.0미만 | 6.0~ 7.0미만 | | |
| | 3.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 수요전력 제어설비 | 2 | 1 | 1 | 1 | 적용 여부 | | | | | | |
| | 4.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 1 | 1 | - | - | 전: | 체 조명전략 | ^{벽의 40%이} | 상 적용 0 | ᅧ부 | | |
| · 전 | 5.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격 등 조명(또는 조도조절기능) 및 자 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 하도록 구성 | | 1 | 1 | 1 | | | 적용 여부 제품인 경 ⁵ | | | | |
| 건 기 설 | 6.층별 또는 구역별로 일괄소등스 위치 설치 | 1 | 1 | - | - | | | 설치 여부 | | | | |
| 비 | 7.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 를 설치 | 1 | 2 | - | - | 층별 1대 | 대 이상 및 | 임대구획 여부 | 별 전력량 | 계 설치 | | |
| 문 | 8.건축물에 너지 관리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에 너지원(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별 로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 3 | 3 | 2 | 2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u>별표2</u> 의2의 설치기준 | _ | 3개이상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 2개 에너지원별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 1개 에너지원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 | |
| |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 1 | 1 | 1 | 1 | | | 적용 여부 | | | | |
| | 10.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 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 2 | 2 | 2 | 2 | 80% 이상 | 70%이상 ~80% | 60%이상 ~70% | 50%이상 ~60% | 40%이상 ~50% | | |
| | 11.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율 | 2 | 1 | - | - | 전체 승 | | 의 60% 이 ₂ 설치 여부 | | 제동장치 | | |
| | | | 전 | 기설비- | 부분 소 | 계 | | | | | | |

| | | | | | 기본배점 (a) | | | | | 배점 (b) | | | | | |
|-------------|-----------------------|--------------------|------|------|--|------------------------------------|-------|------------|-------------|-------------|-----------------|-------------|-----------|------------|--|
| | 항 | 목 | | | 비 ² 대형 (3,000㎡ 이상) | 주거 소형 (500~ 3,000㎡ 미만) | | ·거 주택 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평점 (a*b | |
| | 1.전체난방설비{ | 용량에 | 대한 | 신·재생 | 4 | | 5 | 4 | 2% 이상 | 1.75% 이상 | 1.5% 이상 | 1.25% 이상 | 1% 이상 | | |
| | 에너지 용량 비 | 비율 | | | 4 | 4 | 5 | | 단, 의두 | 무화 대상 7 | 건축물은 2 | 배 이상 적 | 용 필요 | | |
| 신 | 2.전체냉방설비용 | | 대한 | 신·재생 | 4 | 4 | _ | 3 | 2% 이상 | 1.75% 이상 | 1.5% 이상 | 1.25% 이상 | 1% 이상 | | |
| 재 생 설 | 에너지 용량 비 | 비율 | | | · | · | | J | 단, 의두 | 무화 대상 7 | 건축물은 2 | 배 이상 적 | 영 필요 | | |
| 비 부 | 3.전체급탕설비용 에너지 용량 비 | 미용량에 대한 신·재생 비율 | 신·재생 | 1 | 1 | 4 | 3 | 10% 이상 | 8.75% 이상 | 7.5% 이상 | 6.25% 이상 | 5% 이상 | | | |
| | 에디지 증정 브 | | | | | | 단, 의두 | P화 대상 i | 건축물은 2 | 배 이상 적 | 용 필요 | | | | |
| | 4.전체조명설비(| | 대한 | 신·재생 | 4 | 4 | 4 | 3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 |
| | 에너지 용량 비 | 기 <i>音</i> | | | | | | | | | 건축물은 2 계통 연계 | | | | |
| |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 | | | | | | | | | | | | | |
| |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 | | | | | | | | | | | | | |

| 3. 건축 | 물 에너지소요링 | 냥 평가서(제21 <u>3</u> | 조제1항 각 호 | 의 해당 | 하는 경 | 우에 한하0 | 후 작성) | | | |
|-------|------------------------|-----------------------|------------------------|-------------------|-----------------------|--------------------|---------------------------|--------------|------------------------|----------------------|
| | ! 에너지소요량 : 구 분 | 평가 분야별 정 | 보 | | 펴기 | 분이별 정보 | | | | |
| | | 냉·난방면 적 | 지싱층연면적 | 지하층 | | 하고 경포 층고 | 천장고 | 지상층 | <u></u> | 지하층수 |
| | 일반 개요 | <u>역</u> (㎡) | (m²) | 1-10 | (m²) | (m) | (m) | 100 | (층) | (층) |
| | 외벽 | | | 면적 | (m^2) | 평균 열 | 열관류율 : | | | (W/ m²⋅K) |
| 건 축 | 창 및 문 | | | 면적 | (m^2) | 평균 열 | 결관류율 : | | | (W/m²·K) |
| | 최상층지붕 | | | 면적 | 의 합 : (m²) | 평균 열 | 불관류율 : | | (W/m²-K) | |
| | 최하층바닥 | | | 면적 | 의 합 : (m²) | 평균 열 | 결관류율 : | | | (W/m²·K) |
| | 난방 | 난방설비방4 | 식 전체설 | 비용량 | 용량: | 가중효율 | 순환펌 | 프동력 | | 전력난방 비 용량비율 |
| | 13 | | | (kW) | | (%) (COP) | | (kW) | | (%) |
| | 급탕 | 급탕설비방4 | 식 전체설 | 비용량 | 용량: | 가중효율 | 순환펌 | 프동력 | | 전력급탕 비 용량비율 |
| 기 계 | НО | | | (kW) | | (%) (COP) | | (kW) | | (%) |
| | 냉방 | 냉방설비방4 | 식 전체설 | 비용량 | 용량 | 기중효율 | 냉수순환 ^l 펌프동력 | 생수순환 펌프목력 | | 전력냉방 비 용량비율 |
| | | 공조설비방식 | 급·배 | (kW) 기포량 | 용량 | (COP) 가중효율 | (kW) 급·배기 | (kW) 패도려 | (| (%) 결회수율 |
| | 공조 | 0-2-10 | - 급기: 급기: 배기: | (CMH) | 급기 : 배기 : | (%) | 급기 : 배기 : | (kW) | 난방 냉방 | : (%) |
| 전 기 | 조명설비 | 조명기기종 | 로 LF 조명 | D 전력 | 거실 | 조명전력 | 거실 | | 거실 | 실 조명밀도 |
| | 태양열 | 종류 | 집열핀 | | 집열: | (kW) 판기울기 | 집열핀 | (㎡) :방위 | 7 | (W/㎡) 집열효율 |
| | | 종류 | 모듈 | <u>(㎡)</u> 면적 | 모듈 | (°) 기울기 | 모듈 | 방위 | | (%) 2듈효율 |
| 신재생 | 태양광 | | | (m ²) | | (°) | | | | (%) |
| | 지열 | 종류 | 난 방용 5 용량 : 효율 : | (kW) | 용량 : | 응량·효율 (kW) | 용량 : | (kW) | 순환 | <u>한펌프동력</u> (kW) |
| - 건축물 | : 에너지소요량 : | │ 평가 최종 결고 | | (COP) | 효율 : | (COP) | 효율 : | (COP) | | (, |
| | 구 분 | 단위면 에너지: (kWh/r | 요구량 | | 단위면 에너지: (kWh/m | 소요량 | | 1차 에니 | 면적 기지소 1/m²년 | 요량 |
| | 난 방 | | | | | | | | | |
| | 냉 방 급 탕 | | | | | | | | | |
| | <u> </u> | | | | | | | | | |
| | 환기 | | | | | | | | | |
| ※ 단위' | 합계 | · 헤다 フ- | !축물의 난 빙 | ᅡᄖ바 | 근타 | 조며 브드 | 크에서 ㅇ: | 구되는 | 나의다 | _{부전} 다 |
| | ^{진식당} 디요구량 | · 애당 1. 에너지형 | | , oo, | ĦÖ, | ±0 Tī | _ <11 \(\sum_{\text{T}}\) | 146 | L 717 | -70 |
| ※ 단위[| · – | | 5 축물에 설치된 | 난방, 냉 | 방, 급팅 | , 조명, 환 | 기시스템에 | 서 소요되 | 는 단 | 위면적당 |
| ※ 단위[| 지소요량 면적당 1차 | | 노요량에 연료 | | 가공, | 운송, 변횐 | ·, 공급 괴 | H정 등의 | 손실 | 을 포함한 |
| 에너지 | 소요량 | 단위면적 | 당 에너지량 | | | | | | | |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m²-K를 사용하며, 이를 kcal/m²-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m^2 \cdot K] = 0.86 [kcal/m^2 \cdot h \cdot C]$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 건축물의 구분 | 계 산 법 |
|------------------------------|---|
| 거실의 외벽 |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
| (창포함) |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
| (Ue) |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 | Ur = ∑(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
| 바닥 (Uf) |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 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 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 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5) "외주부"라 함은 거실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하며, 개폐 가능한 창면적은 창이 개폐되는 실유효면적을 말한다.
- 주6)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외피면적 계산 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한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

| 건축물의 구분 | 계 산 법 |
|----------|--|
| 거실 외피면적당 | Σ(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 x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x |
| 평균 태양열취득 |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합 |

-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 의 태양열취득률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 × 창틀계수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 투광면적(m²) / 창틀을 포함한 창면적(m²) 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틀계수를 0.90으로 가정한다.
-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다.

- ※ 투광부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복층유리의 경우 40% 이상, 3중유리의 경우 30% 이상, 4중유리 이상의 경우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거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 ※ 지하층 및 벽이나 문 등으로 거실과 구획되어 있는 비냉난방공간(예: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에 면한 외 피는 태양열취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1>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m²)

| 방위 | 남 | 남서 | 서 | 서북 | 북 | 북동 | 동 | 동남 |
|---------------|-----|-----|-----|-----|-----|-----|-----|-----|
| 평균 수직면 일사량 | 256 | 329 | 340 | 211 | 138 | 243 | 336 | 325 |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 까지의 길이(H) | 남 | 남서 | 서 | 북서 | 북 | 북동 | 동 | 동남 |
|--|------|------|------|------|------|------|------|------|
| 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0.2 | 0.57 | 0.74 | 0.79 | 0.79 | 0.89 | 0.78 | 0.79 | 0.73 |
| 0.4 | 0.48 | 0.55 | 0.63 | 0.64 | 0.83 | 0.64 | 0.63 | 0.54 |
| 0.6 | 0.45 | 0.42 | 0.51 | 0.54 | 0.79 | 0.54 | 0.50 | 0.42 |
| 0.8 | 0.43 | 0.35 | 0.42 | 0.48 | 0.76 | 0.48 | 0.42 | 0.36 |
| 1.0 | 0.41 | 0.33 | 0.36 | 0.43 | 0.73 | 0.43 | 0.37 | 0.33 |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폭까지의 길이(W) | 남 | 남서 | 서 | 북서 | 북 | 북동 | 동 | 동남 |
|--|------|------|------|------|------|------|------|------|
| 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0.2 | 0.73 | 0.84 | 0.88 | 0.76 | 0.68 | 0.79 | 0.89 | 0.82 |
| 0.4 | 0.61 | 0.72 | 0.79 | 0.61 | 0.56 | 0.64 | 0.80 | 0.67 |
| 0.6 | 0.54 | 0.60 | 0.74 | 0.46 | 0.47 | 0.50 | 0.75 | 0.54 |
| 0.8 | 0.50 | 0.51 | 0.70 | 0.38 | 0.42 | 0.42 | 0.71 | 0.46 |
| 1.0 | 0.45 | 0.43 | 0.65 | 0.28 | 0.34 | 0.31 | 0.66 | 0.39 |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유리의 외측에 설치 |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 유리 내측에 설치 | | | | |
|------------|--------------|-----------|--|--|--|--|
| 0.34 | 0.5 | 0.88 | | | | |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 | 유리종류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 투과율 | | | | | | | | |
|-----|----------|-----------------------|-------------------|-------|-------|-------|-------|--|--|--|
| 공기층 | | 6r | nm | 12 | 'mm | 16mm | | | | |
| | | 태양열 | 가시광선 | 태양열 | 가시광선 | 태양열 | 가시광선 | | | |
| | | 취득률 | 투과율 | 취득률 | 투과율 | 취득률 | 투과율 | | | |
| | 일반유리 | 0.717 | 0.789 0.719 0.789 | | 0.719 | 0.789 | | | | |
| 복층 | 일반유리+아르곤 | 0.718 | 0.789 | 0.720 | 0.789 | 0.720 | 0.789 | | | |
| 70 | 로이유리 | 0.577 | 0.783 | 0.581 | 0.783 | 0.583 | 0.783 | | | |
| | 로이유리+아르곤 | 0.579 | 0.783 | 0.583 | 0.783 | 0.584 | 0.783 | | | |
| | 일반유리 | 0.631 | 0.707 | 0.633 | 0.707 | 0.634 | 0.707 | | | |
| 삼중 | 일반유리+아르곤 | 0.633 | 0.707 | 0.634 | 0.707 | 0.635 | 0.707 | | | |
| | 로이유리 | 0.526 | 0.700 | 0.520 | 0.700 | 0.518 | 0.700 | | | |
| | 로이유리+아르곤 | 0.523 | 0.700 | 0.517 | 0.700 | 0.515 | 0.700 | | | |
| | 일반유리 | 0.563 | 0.637 | 0.565 | 0.637 | 0.565 | 0.637 | | | |
| 사중 | 일반유리+아르곤 | 0.564 | 0.637 | 0.565 | 0.637 | 0.566 | 0.637 | | | |
| ^ਾਠ | 로이유리 | 0.484 | 0.629 | 0.474 | 0.629 | 0.471 | 0.629 | | | |
| | 로이유리+아르곤 | 0.479 | 0.629 | 0.468 | 0.629 | 0.466 | 0.629 | | | |

주7)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 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 대지 내에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2) / (해당동의 높이) 로 산출한다.
- 주8)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 주9) 펌프 효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E는 다음표의 A 및 B효율을 의미하며 A 및 B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다..
 - 나) 펌프가 여러대일 경우에는 개별 펌프에 대해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 펌프의 가중평균 배점 = Σ {토출량(m^2 /분)*대수(대)*각 펌프의 배점}/ Σ {토출량(m^2 /분)*대수(대)}
 - ※ 단, 토출량 0.2m³/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 | | | | | | | | | | | | | | | | | | | |
|---|----------------------|-----|------|---------|--------|------|------|-------|-------|------|---------|-------|------|--------|-------------|------|------|------|-------|------|
| 토출 | 0.08 | 0.1 | 0.15 | 0.2 | 0.3 | 0.4 | 0.5 | 0.6 | 0.8 | 1.0 | 1.5 | 2 | 3. | 4 | 5 | 6 | 8 | 10 | 15 | |
| 遠울: | A효율(%) | 32 | 37 | 44 | 48 | 53.5 | 57 | 59 | 60.5 | 63.5 | 65.5 | 68.5 | 70.5 | 73 | 74 | 74.5 | 75 | 75.5 | 76 | 76.5 |
| | B효율(%) | 26 | 30.5 | 36 | 39.5 | 44 | 46.5 | 48.5 | 49.5 | 52 | 53.5 | 56 | 58 | 60 | 60.5 | 61 | 61.5 | 62 | 62.5 | 63 |
| ■ 대형펌 |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 | | | | | | | | | | | | | | | | | | |
| 토출량(m³/분) | | 2 | | 3 | 4 | | 5 | | 6 | 8 | | 10 | 15 | 5 | 20 | 3 | 30 | 40 | | 50 |
| 효 鋥 | A효율(%) | 67 | | 70 | 7 | 1 | 72 | | 73 | 74 | | 75 | 76 | 3 | 77 | 7 | '8 | 78.5 | | 79 |
| 포크드 | B효율(%) | 57 | | 59 | 6 | 0 | 61 | 6 | 1.5 | 62.5 | 5 | 63 | 64 | 1 | 65 | 6 | 66 | 66.5 | .5 67 | |
|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I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Ipm 또는 (m²/(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계수 펌프종류 | | | 11 | а | | | | b | | | С | | | 해당펌프종류 | | | | | | |
| 소형펌프 | | | A특성 | | -1.73 | | 1 | | 32. | | | -75.8 | | | 소형벌루트펌프 | | | | | |
| | | | B특성 | \perp | -1.403 | | 1 | | 26. | | \perp | -61.3 | | |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 | | | | |
| 대형펌프 대형펌프 | | - | A특성 | \perp | -0.697 | | | | 16.43 | | \perp | -17.3 | | |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 | | | | |
| | | B특성 | | -0.407 | | | | 10.52 | | | 0.71 | | | | | | | | | |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 주10) 열회수형환기장치는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 적용 시 배점획득이 가능하며 개별장치의 난방과 냉방 열교환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 배점을 받을 수 있다.
- 주11)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